

Vol.1535



# 법원공보

2018. 1. 1. MON

법원행정처





◆ 2018년도 대법원 시무식

2018년도 대법원 시무식이 2018.1.2.(화) 10:00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재경 각급 법원장, 재경 각급 법원 판사 및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 ● 목 차

예규	5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72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신법령 목록	75	

## 예 규

###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141호 2017. 12. 12. 결재)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명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을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각 부서”를 “각 부서,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아목, 카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다. 대통령경호처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 행정안전부

더. 해양경찰청

같은 호 러목 중 “(주)씨비에스”를 “(재)씨비에스”로, “교통방송 등”을 “교통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채널에이, (주)디지털조선일보, (주)제이티비씨, (주)매일방송,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등”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방위경보”란 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방공경보와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경보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민방위 경보시설”을 ““민방위 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로, “방송연결장비·경보단말(경보단말)과 재난경보방송시스템·원자력발전소 및 댐 경보시설 등 재난경보전용장비와 그 밖에 경보전달”을 “방송사연결장비·TV자막송출장비·경보단말(警報端末) 등 민방위경보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경보전달책임자”(이하 “시·군·구 경보책임자”라 한다)”로, “시·군·구 지역”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역”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보”를 “해당 관할 읍·면·동 지역에 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군사령관”이란 평시에는 공군작전사령관을 말하며, 전시에는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말한다.

9.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공중공격”을 “공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될 것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될 것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피해가”로,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로 한다.

제5조 중 “같다.”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군구성군사령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으로, “민방공훈련”을 “민방위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요청받았을 때”를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공군사령관”으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시·도 민방위경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통제소”라 한다) 및 시·군 분배소”를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분배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공군사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역의 읍·면·동장”을 “그 지역의 읍·면·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 받았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해야”를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 받았을 때(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민방공경보를 발령하는 때 포함)는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전달이 곤란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하여

야”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을 “경보시설”로, “주요기관 및 감사원”을 “주요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정보통제소”를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체계에 따라 중앙정보통제소”로 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시·군·구 정보전달책임자”를 “시·군·구 정보책임자”로, “지역 군부대장이 제6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지역 군부대장이”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보사이렌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를 “경보단말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한다.

라.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제9조제6항 중 “시·군·구 정보전달책임자(이하 “정보책임자”라 한다)”를 “시·군·구 정보책임자”로, “전달하여야 하며, 읍·면·동 정보담당자(이하 “정보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한다.”를 “전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군·구정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면·동정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도정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가 관내 경보사이렌”을 “중앙정보통제소 및 시·도정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경보단말”로,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을 “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정보통제대 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정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경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경보발령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담당자”를 “제6조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읍·면·동 정보담당자”로, “경보사이렌”을 “경보단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제10조 중 “(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를 “(민방공경보방송)”으로, “『별표 3』 내지 『별표 6』에 의하여”를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서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CBS)를”을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써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공군사령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발령사유, 발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읍면동장 및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6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를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난경보를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을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본부 본부장(이하 “원자력 본부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을 “한국원자력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요청할 경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2. 전력수급단계가 경제단계(200~100만kW) 또는 심각단계(100만kW 이하)일 때

제14조제4항 전단 중 “발령한다.”를 “발령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보발령 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경보 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을 “시·도경보통제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가스폭발”을 “가스폭발, 전력수급 위기경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비상연락망”을 “통신수단 및 비상연락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군·구 경보사이렌”을 각각 “경보단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군·구 정보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군·구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단말에 전달하거나, 읍·면·동 정보담당자가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
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③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정보를 전달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경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38조”를 “제38조의2”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보고 등)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경보의 전달을 요청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제19조(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경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 정보책임자 또는 읍·면·동 정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경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상태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체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소방방재청장”을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 교육실시결과 는 매년 12. 20.까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활용 요청 시에는”을 “활용계획 통보는 활용할 일자의 10일전에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활용사유”를 “활용일시 및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일시”를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7일까지로 한다.”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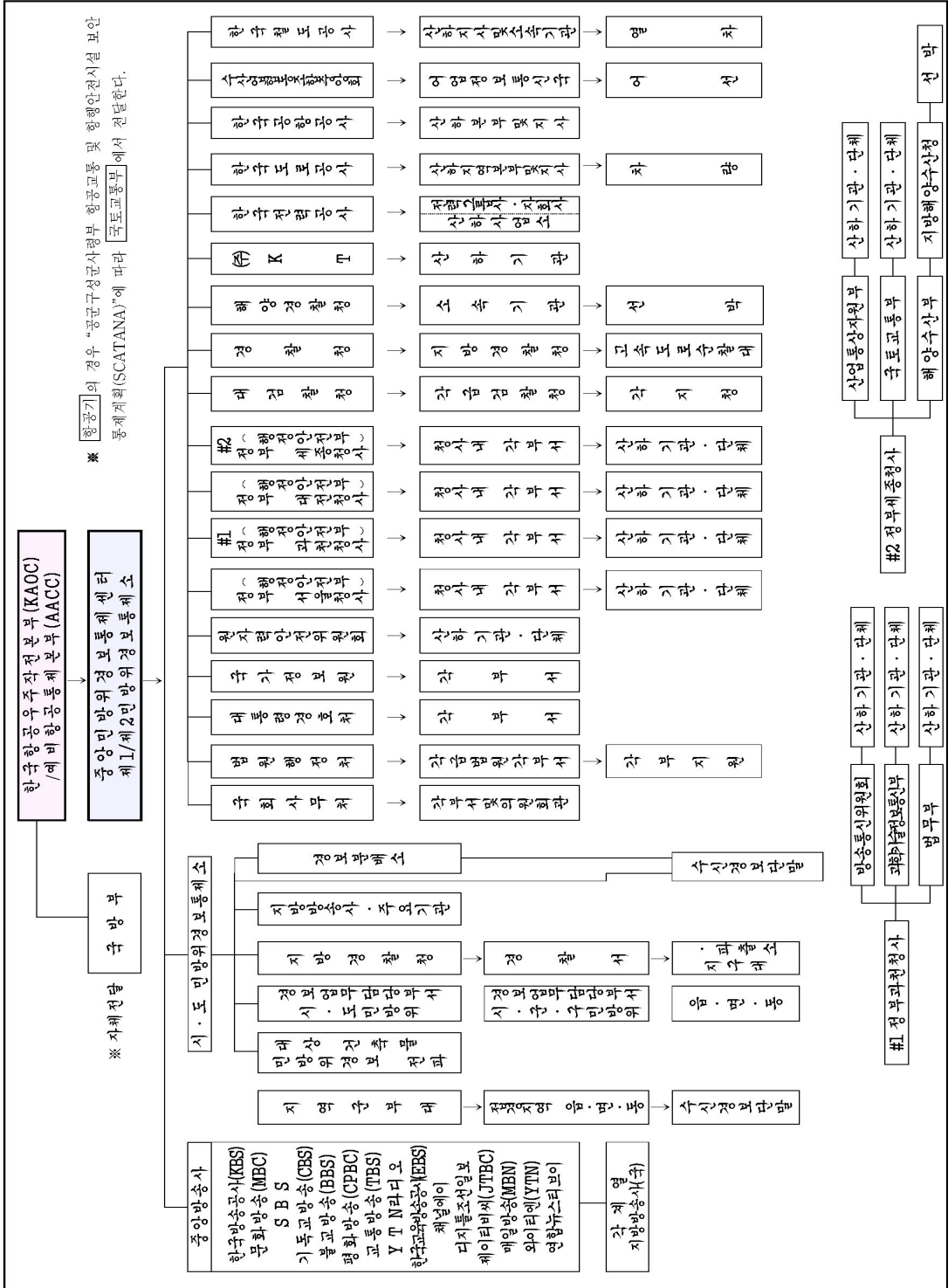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민방공경보전달체제도



[별표 3]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변경 활용 가능)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 1. 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방송문안

#### 가.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지역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지역 ]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나.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

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지역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지역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

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 및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지역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 지역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 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바.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2. 야간 민방공경보 라디오방송문안

\* 야간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

### 가. 야간 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지역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 지역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야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나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 야간 공습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지역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지역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라. 야간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끈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지역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바. 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3. 화생방경보 라디오방송문안

#### 가. 화생방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지역 ]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지역 ]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나. 화생방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상황1 : 화생방 작용제 탐지 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및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생방 대피호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 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신속히 오염지역을 이탈하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 화생방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재난경보 라디오방송문안****가. 재난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 낙하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난위험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호우, 태풍, 지진해일, 화산재 낙하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음 ~ )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재난경보해제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재난피해 응급복구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재난(경계·위험)경보(호우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행정관서 및 가까운 이웃과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둡시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고 막힌 배수로는 물이 잘 빠지도록 정비합니다.
- 집 주위의 축대, 담장 등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출타 중 일 때는 일찍 귀가합니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니다.
-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철탑, 전신주나 큰나무 밑으로 가지 않습니다.
- 차량은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에는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하도록 합니다.
- 농작물 보호를 위해 배수로를 깊이 파주고 물빠기를 합니다.
- 등산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물이 불어 난 계곡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지 않도록 합니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합니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읍시다.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신 후 호우경보 발표 시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 갑자기 침수, 고립되었을 때에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니다.
- 침수가 되었던 집에 들어가실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전기시설은 한전 등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 재난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경계·위험)경보(태풍내습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태풍상황 방송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 제방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해수욕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둡시다.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합니다.
- 해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 시설은 철거토록 합니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니다.
- 태풍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바. 지진해일 주의보·경보시 국민행동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합니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니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사. 재난(경계·위험)경보(화산재 낙하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 화산재 낙하 전 】

- 문틈 및 환기구에는 적신 수건으로 막고, 창문은 테이프로 막읍시다.



- 낙수받이나 배수관을 지붕의 홈통으로부터 분리하고, 급수용으로 빗물수집 시설 사용시에는 빗물수집시설과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를 분리합니다.
  -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환자는 실내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 가축의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 화산재 낙하 중 】

-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 불필요하게 실외에 있지 않도록 하고, 실외에 있을 경우 자동차나 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 마스크나 손수건,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맙니다.
  - 물에 화산재가 들어 간 경우 가라앉은 후 옷물을 사용하고, 채소는 잘 씻어 먹도록 합니다.
  - 화산재 등에 대한 재난방송을 청취합니다.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5. 전력수급 위기사태시 라디오방송문안

### 가. 재난경계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전력수급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 한파로 / 폭염으로 ]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최대한(즉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절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되었던 전력수급  경계  심각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전력수급  경계  심각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6.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시 라디오방송문안****가. 재난경계·위험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국가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 해제경보**

국민 여러분!

여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실제 [ 재난경계  
재난위험 ]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1. 일반 행동요령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2.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기 바라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3.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족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족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을 금지 합니다.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 4.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며,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7. 민방공경보 텔레비전 문자문안

### 가. 경계경보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지역 ]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 나. 공습경보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지역 ]에 실제 공습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지하대피

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 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다. 화재방경보**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 ○ ○ ○ 지역 ]에 실제 화재방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마. 해제경보**

[ 우리나라 전역 ]  
 [ ○ ○ ○ 지역 ]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8.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가. 재난위험경보**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 ○ ○ ○ 지역 ]에 실제 재난위험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나. 해제경보**

[ 우리나라 전역 ]  
 [ ○ ○ ○ 지역 ]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별표 4]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변경 활용 가능)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 1. 주간 민방공경보 방송문안

#### 가. 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나.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 공습경보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과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 지역 주민 여러분!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 지역 주민 여러분!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수습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바. 경보해제

- 지역 주민 여러분!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2. 야간 민방공경보 방송문안

\* 야간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

### 가. 야간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야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모든 전등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나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경계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 야간 공습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라. 야간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끈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전등을 끈 다음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 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유도와 차량운행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공습경보발령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시·군)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마. 재차 경계경보(공습경보→경계경보)

- 지역 주민 여러분!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바. 경보해제

- 지역 주민 여러분!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 실제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3. 화생방경보 방송문안

#### 가. 화생방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나. 화생방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상황1 : 화생방 작용제 탐지 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노출 방지 및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생방 대피호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 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상황2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시 현재 ○○지역에 대한 실제 화생방경보발령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 화생방경보해제

- 지역 주민 여러분!
-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4. 재난경보 방송문안

### 가. 재난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호우·태풍·지진해일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실제 재난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난위험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실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호우·태풍·지진해일 등) 긴급사태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

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음 ~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재난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계·위험)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계·위험)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재난피해 응급복구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 재난(경계위험)경보(호우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모든 가족은 일찍 귀가합니다.
  - 집주위의 축대, 담장 등의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보수하거나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 철탑, 전주, 고목, 축대 등 위험시설물엔 접근하지 않습니다.
  - 가옥 내·외의 배수로를 확인하고 오물 등을 제거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합니다.
  - 간판 등 바람에 날릴 염려가 있는 물건은 사전에 단단히 묶어 두거나 제거합니다.
  - 교통수단은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운행할 때에는 평소 잘 아는 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하도록 합니다.
  - 등산, 낚시, 피서객은 즉시 하산하거나 신속히 철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키도록 합니다.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겨 놓읍시다.
  -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합니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니다.
  - 재난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 재난(경계위험)경보(태풍내습 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 가옥·축대 등이 안전한 가 살펴보고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합니다.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방파제, 부두가, 해변 제방 등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 보행 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방파제,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니다.
- 해수욕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둡시다.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합시다.
  - 해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시설은 철거토록 합시다.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신 후 태풍경보 발효시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 요청합시다.
  - 태풍피해 발생시는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바. 지진해일 주의보·경보시 국민행동요령

-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우리지역에 00시00분경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을 경청하시면서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해변 저지대 이웃주민에게 널리 알립시다.
  - 신속히 임시대피소나 높은 지대로 대피합시다.
  - 해안의 저지대 도로 운행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차량은 신속히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합시다.
  - 운항중인 선박은 먼 바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항구에 정박중인 선박은 가급적 먼 바다로 대피합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 이상 ○○시·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5. 전력수급 위기사태

### 가. 재난경계경보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 지역에 전력수급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 지역에 [ 한파로  
폭염으로 ]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각 가정과 사무실, 공장에서는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최대한(즉시)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각 전력수급 경계(심각)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절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사도민방위경보통제소(○○사·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나. 해제경보

주민 여러분!

여기는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사·군·구)입니다.

현재시각 ○ ○ 지역에 발령되었던 전력수급 [ 경계  
심각 ]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전력수급 경계(심각)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사·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6. 국내원전 방사능 누출

### 가. 재난경계·위험경보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사·군·구)입니다.

현재시각 ○○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 지역에

피해가 [ 우려되어  
발생하여 ] 실제 [ 재난경계  
재난위험 ] 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나. 해제경보

○○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 가. 재난경계·위험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국가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발생하여

○○지역에 실제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를 발령합니다.

-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재난위험경보시) -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나. 해제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입니다.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 재난경계 ]  
[ 재난위험 ] 경보를 해제합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경찰 등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이상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시·군·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1. 일반 행동요령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며,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2.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하시기 바라며,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기 바라며,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가축은 축사로 이동하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주시기 바라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 3.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비상 내용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하지 마시기 바라며,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을 삼가고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옥내대피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유아, 아동, 임산부, 노약자를 우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옥내대피 및 소개 안내를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을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되며,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고, 가축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수용 또는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을 금지 합니다.
  - 환경감시 등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 4. 복귀 시 행동요령

- 경찰, 민방위대 또는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시기 바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오염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 지역 외 접근을 금지합니다.
- 환경감시등 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 또는 정부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라며,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를 금지합니다.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8. 민방공경보 텔레비전 문자문안

### 가. 경계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

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 나. 공습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지하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 다. 화생방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 마. 해제경보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 9.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 가. 재난위험경보

현재시각 ○ ○ ○ 지역에 실제 재난위험경보 발령 /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 나. 해제경보

○ ○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경보 발령 해제 /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별표 5]

##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변경 활용 가능)



##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 상황 1 : 레이더의 허위항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 ○ ○ ○ 지역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상황 2 : 적 항공기 귀순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 ○ ○ ○ 지역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상황 3 :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 ○ ○ ○ 지역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복상 도주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4 : 기타 상황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 지역 ]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상황 5 : 화생방 오보 발령 시**

국민여러분!

현재시각 [ 우리나라 전역 ]  
○○○ 지역 ]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으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별표 6]

##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변경 활용 가능)

## 지역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

### 상황 1 : 레이더의 허위향적 포착 시(조류 떼 포착 등)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상황 2 : 적 항공기 귀순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상황 3 :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을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 도주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상황 4 : 화생방 오보 발령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 상황 5 : 기타 상황 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각 ○○지역에 발령된 경계(공습)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  
(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도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 처음부터 1회 더 반복방송 ]

[별표 7]

##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본 방송문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상황에 맞게 방송문안의 일부를 수정·변경 활용 가능)

##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현재시각 ○○지역에 실제○○경보발령, 경보 미 수신지역은 자체경보를 발령하고 민방위경  
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을 전달 할 것.

[ 처음부터 2회 더 반복방송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대통령경호실

라. · 마. (생략)

바. 국민안전처

사. (생략)

아. 미래창조과학부

자. · 차. (생략)

카. 행정자치부

타. ~ 너. (생략)

더. <삭제>

러.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에스비에스, (주)씨비에스, (주)YTN라디오,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이하 “중앙방송사”라 한다)과 지방 방송사

#### 개 정 안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제1조(목적) -----  
----- 같은 법 -----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

제2조(정의) -----

- 1. ----- 각 부서, 소속기관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경호처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삭제>

사. (현행과 같음)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 · 차. (현행과 같음)

카. 행정안전부

타. ~ 너. (현행과 같음)

더. 해양경찰청

러. ----- (재)씨비에스 -----

----- 교통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채널에이, (주)디지털조선일보, (주)제이티비씨, (주)매일방송,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등





현 행

<신 설>

제4조(경보의 종류) ① (생 략)

② 민방공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 1. (생 략)
-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 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중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 일 때에 발령하는 정보

3. · 4. (생 략)

③ 재난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정보
-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정보

3. (생 략)

제5조(신호방법)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종류별 신호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 정 안

9.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이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서 정한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4조(경보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 2. -----  
----- 공격 -----  
-----

3. · 4. (현행과 같음)

③ -----  
----- .

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어 피해가 -----  
-----

2.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정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  
-----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호방법) -----  
같으며, 필요한 경우 문자, 이미지 및 전자적인 방법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현 행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군구성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공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생략)

③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 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공군구성군사령관은 적기의 출현 또는 이상 징후의 발견 등 긴박한 상황전개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에게 알리지 못한 경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이라 하고,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공경보발령의 사전예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개 정 안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은 공군사령관-----

----- 민방위훈련

② (현행과 같음)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  
----- 요청 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 .

제7조(민방공경보발령 요청의 사전예고 등)

① 공군사령관-----  
-----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 -----

-----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장 또는 상황팀장(이하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 -----

②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제2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하 포괄하여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현 행

- 1. 중앙민방위정보통제센터 제1민방위정보 통제소와 제2민방위정보통제소(이하 “중앙정보통제소”라 한다)와 시·도 민방위 정보담당부서(이하 “시·도 경보 통제소”라 한다) 및 시·군 분 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 2. ~ 4. (생 략)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공군구 성군사령관은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민방공 경보의 종류와 경보발령시각, 경보발령지역을 제1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제1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지 못할 경우 제2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 군부대장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지역 등을 그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또는 시·도 정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서면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 정 안

- 1. -----  
-----  
----- 시·도 민방위 정보통제소 및 분배소 -----  
-----  
-----
-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① 공군사령관 -----  
-----  
-----  
-----  
-----  
-----  
-----  
-----  
-----  
-----  
-----  
-----

② -----  
-----  
-----  
-----  
-----  
-----  
-----  
-----  
-----  
----- 그 지역의 읍·면·동장 -----  
-----  
-----

현 행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 받았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그 경보의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 ① (생략)
- ②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민방공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 및 감사원에 대해서는 직통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 ③ (생략)
- ④ 주요기관에서는 중앙경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를 자체 전파하고 산하 기관·단체 등에 전달하여야 하며, 경보를 전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은 하급기관 및 관련기관이나 항공기·선박·철도·고속도로순찰대 등의 교통통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 정 안

③ -----  
-----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 받았을 때(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민방공경보를 발령하는 때 포함)는 자체적으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전달이 곤란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하여야-----.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경보시설-----  
-----  
----- 주요기관-----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별표2의 민방공경보전달 체계도에 따라 중앙경보통제소-----  
-----  
-----  
-----  
-----  
-----.
- ⑤ -----  
-----.

현 행

1. 시·도지사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구 정보전달책임자 및 접경지역 읍·면·동장 또는 지역 군부대장이 제6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보 전달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경보를 즉시 전달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2. 중앙정보통제소에서 전달받은 정보가 시·군·구 정보사이렌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3. (생략)

⑥ 시·군·구 정보전달책임자(이하 "정보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읍·면·동 정보담당자(이하 "정보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정보사이렌을 조작하여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도 정보통제소장에게 정보 전달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보전달 또는 시·군 분배소의 정보통제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안

1. -----  
시·군·구 정보책임자-----  
----- 지역 군부대장이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문자전송시스템 또는 크로샷을 이용하여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정보전파책임자에게 정보발령사항 전달

2. -----  
----- 정보단말 및 관내 지방방송사(국),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

3. (현행과 같음)

⑥ 시·군·구 정보책임자-----  
-----  
전달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한 경보를 시·군·구정보통제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거나, 읍·면·동정보담당자가 정보단말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8조3항 단서에 따라 시·도정보통제소장에게 정보 전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 행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가 관내 경보 사이렌까지 즉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고, 민방위정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및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를 전달한다.

3. 시·군·구 민방위정보업무담당부서는 직통전화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⑦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경보발령 또는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민방공경보의 방송체계) 제9조에 따른 경보방송은 별표 3 내지 별표 6에 의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서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방송서비스(CBS)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불능 시의 조치) ① (생략)

개 정 안

2. 중앙정보통제소 및 시·도정보 통제소에서 전달받은 경보가 관내 경보단말-----경보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정보통제대 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정보담당자가 경보단말을 이용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민방위정보업무담당부서(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그 밖의-----.

<삭 제>

⑦ ----- 제6조 제3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및 읍·면·동 정보담당자----- 정보단말-----

제10조(민방공경보방송) -----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라 ----- 텔레비전 문자방송을 실시하고 보조수단으로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긴급재난문자방송(CBS) 등을 이용한 음성, 문자방송 등을-----.

제11조(민방공경보전달 및 경보방송불능 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②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분배소 포함)은 유선통신  
에 의한 정보전달 및 경보방송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중앙정보통제소의 위성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여  
야 한다.

③·④ (생략)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공군  
구성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정보통제  
소장(상황팀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보고)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는 차하급자)은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민  
방위경보통제센터장 또는 중앙정보통제소장  
을 통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필요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접경지역 읍·  
면·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경보를  
발령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  
의 장과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정보통제소장  
(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안

② -----  
-----  
-----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장비 및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① 공군  
사령관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고)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 경우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발령사유, 발  
령일시, 발령지역, 경보종류를 즉시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민방위경  
보통제센터장은 민방공 경보 발령사항, 조치  
사항,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접  
경지역 읍·면·동장이 경보를 발령한 경우  
읍·면·동장 및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  
보고하고,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소  
속기관의 장과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정보통제  
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③ 제6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경보를 전달하거나 제12조에 의한 해명방송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재난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2개 시·군·구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시·군·구 경보책임자,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제16조에 따라 재난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본부 본부장(이하 "원자력 본부장"이라 한

개 정 안

③ 제12조에 따른  
-----  
-----  
-----  
-----

〈삭 제〉

제14조(재난 경보의 발령) ① -----  
-----  
-----  
-----  
-----  
-----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행  
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재  
난경보를 발령한다.

② ----- 시·도  
경보통제소장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장(상황팀장) -----  
-----  
-----

③ ----- 한국원자력  
사업자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현행

다)은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대피 또는 소개 등이 필요할 경우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경보 발령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의 종류, 발령시각, 재난상황 등을 서면 또는 직통전화·FAX·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④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에 있어서는 홍수통제소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가 발령한다. 이 경우 정보 발령자는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군·구 정보책임자 또는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청(지역기상대)의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기상특보 수신 시, 신속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 및 기관장의 보고 또는 승인 등의 사전절차 없이 재난경보를 발령·전달한 후에 보고한다.

개정안

.....  
.....  
.....  
.....  
.....  
..... 요청할 수  
..... 있으며, 경보발령을 요청할 때.....  
.....  
.....

- 1. 국내·외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 2. 전력수급단계가 경계단계(200~100만kW) 또는 심각단계(100만kW 이하)일 때

- ④ .....  
.....  
.....  
.....  
.....  
.....  
..... 발령할 수 있으며, .....  
..... 경보발령상황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시·도 경보통제소장.....  
.....  
.....  
.....  
.....  
.....  
.....

현 행

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정보의 종류와 정보발령시각, 정보발령지역을 제1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화상전화(화상전화고장 시 그 밖의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재난경보발령의 사전준비)

재난정보의 발령권자는 경보의 발령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정보발령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 가. (생략)
  - 나. 방사능누출, 가스폭발 등 재난관련 정보
2. ~ 4. (생략)
5. 재난관련기관간의 비상연락망 상시유지 등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시·도 정보통제소장은 시·도지사가 재난정보를 발령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전달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개 정 안

⑥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  
-----  
-----  
-----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 경우 재난정보의 종류와 정보발령시각, 정보발령지역을 시·도 정보통제소장에게 사전 협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경보발령의 사전준비)

-----  
-----  
-----

1. -----  
-----
- 가. (현행과 같음)
- 나. ----- 가스폭발, 전력수급 위기경보
2. ~ 4. (현행과 같음)
5. ----- 통신수단 및 비상연락망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① -----  
-----  
-----  
-----

현 행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 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상황전파
  3. 방사능 누출사고 등 대형 재난으로 주민의 긴급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을 실시하고 이동멀티미디어(DMB)를 활용하여 문자방송을 실시 가능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군부대, 지방경찰청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 ② 시·군·구 정보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며 시·도 정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하거나 또는 읍·면·동 정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경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다.
1. 시·도 정보통제소장에게 경보 사이렌 올림과 방송 요청 또는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경보사이렌 올림 및 음성으로 경보전파
  2. 분배소는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직접 경보전달
  3.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개 정 안

1. -----  
경보단말-----
  2. -----  
----- 경보단말-----
- <삭 제>
- <삭 제>
- ② 시·군·구 정보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시·군·구 정보통제대를 이용하여 경보 단말에 전달하거나, 읍·면·동 정보담당자가 해당 경보단말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하도록 지시
  2. 제1호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 정보통제소장에게 경보전달을 요청

현 행

- 4. 읍·면·동 정보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사이렌을 조작하여 경보를 전달
- ③ 시·군·구 정보책임자는 재난지역에 정보사이렌이 없거나 경보전달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정보사이렌 이외의 재난경보전용장비를 이용하여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경보방송 요청)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경보 발령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방송사에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제19조(준용규정) 재난 정보의 전달체계 및 운용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 군부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민방공 경보"는 "재난 경보"로 보며,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은 대형재난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여 경보방송을 요청할 경우에 실시한다.

개 정 안

- ③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경보를 발령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한다.

1. 정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단말에 정보전달
2.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해당 정보단말에 경보상황전파

제17조(재난경보방송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제38조의2

제18조(보고 등)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재난 경보를 실시하거나 재난경보의 전달을 요청 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결과를 경보전달 요청자 및 상급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한다.

제19조(재난경보 전달 불능 시 등 조치) ① 시·도 정보통제소장은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정보통제소장이 발령한 재난경보가 자동으로 정보단말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 정보책임자 또는 읍·면·동 정보담당자로 하여금 수동으로 정보단말을 울리거나 음성방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중앙정보통제소장(상황팀장) 및 시·도 정보통제소장은 발령한 재난경보가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정보단말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제20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보시설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장비의 추가·축소 등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안전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밖의 시설관리 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교육훈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경보단말을 활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안

제20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행정안전부장관  
----- .

⑤ -----  
행정안전부장관-----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요기관이 운영하는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처장관-----  
-----  
-----

② ----- 자체교육계획은 매년 1. 20.까지, 교육실시결과는 매년 12. 20.까지-----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① -----  
-----  
-----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예보의 발령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

현 행

② 경보단말 활용 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활용사유
2. (생략)
3. 활용방법(사이렌 울림 또는 음성방송) 및 일시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경보단말 활용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단말을 울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단말 가청지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7일까지로 한다.

개 정 안

② ----- 활용계획 통보는 활용할 일자의 10일전에 하여야 하며, 활용계획에는...

1. 활용일시 및 사유
2. (현행과 같음)
3. -----  
----- 사이렌 울림 시 혼란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③ 행정안전부장관-----  
-----  
-----  
-----  
-----  
-----  
-----

제23조(재검토기한) -----  
-----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142호 2017. 12. 12. 결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3(후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미성년후견 등 후견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및 관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후견사건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후견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직원, 가정법원 후견실무연구회원, 법인후견인 대표, 전문가후견인 대표, 전문후견감독위원 대표, 시중은행 담당자, 사회복지 또는 후견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단체 대표,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업무별 담당자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자문)에 있어서 상담(자문)위원 위촉·관리,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자문)절차관리, 상담(자문)의뢰, 상담(자문)수당지급, 상담(자문)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제7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위촉·관리, 전문가진단절차 관리, 전문가 진단 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5.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신설〉

#### 제7조(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

- ①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가사참여관, 조사관(전문, 전담 및 겸임 포함) 또는 일반직원(법원주사보 이상) 중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개정안

#### 제6조3(후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미성년후견 등 후견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및 관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후견사건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후견협의회의(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직원, 가정법원 후견실무연구회원, 법인후견인 대표, 전문가후견인 대표, 전문후견감독위원 대표, 시중은행 담당자, 사회복지 또는 후견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단체 대표,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제7조(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

- ① -----  
-----  
-----  
-----  
----- .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업무별 담당자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현행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가정법원장, 지원장 또는 가사담당법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에 있어서 상담위원 위촉·관리,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절차관리, 상담의뢰, 상담수당지급, 상담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2.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개정안

② -----  
-----  
----- .

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자문)에 있어서 상담(자문)위원 위촉·관리,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자문)절차관리, 상담(자문)의뢰, 상담(자문)수당지급, 상담(자문)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위촉·관리, 전문가진단절차 관리, 전문가진단 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5.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6. (중전의 4호와 같음)

## ● 신법령 목록 (2017. 12. 1. ~ 12.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b>【법률】</b>				
법률제1504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2017. 12. 4	19145	4
법률제15149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2. 12	19151	5
법률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15151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515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15153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15155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151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5157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515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516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1516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15162호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516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151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15166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5167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15168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15169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5170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15171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1517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2. 12	19151	35
법률제1517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1517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15175호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15176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5177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15178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1517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5180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43
법률제1518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15182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151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15184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1518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15186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1518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1518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15189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15190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15191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15192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15193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1519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3
법률제1519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63
법률제1519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15197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1519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15199호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1520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9
법률제1520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2

법률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 12. 12	19151	74
법률제1520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520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1520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6
법률제15206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77
법률제15207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8
법률제15208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80
법률제15209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1521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15211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82
법률제1521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84
법률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	85
법률제15214호	국회미래연구원법	"	"	99
법률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5
법률제1521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6
법률제150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	"	107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45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1	19144	4
대통령령제2845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5	19146	4
대통령령제28459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46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46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28462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12	19151	108
대통령령제28463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0
대통령령제28464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1
대통령령제28465호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	"	117

대통령령제2846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2. 12	19151	120
대통령령제28467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2846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2
대통령령제2846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5
대통령령제28470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25
대통령령제2847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	"	133
대통령령제2847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8

### 【총리령】

총리령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6	19147	4
총리령제1428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8	19149	4
총리령제142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3	19152	4
총리령제14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5	19154	5
총리령제143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 【부령】

교육부령제14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	19144	6
행정안전부령제19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1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	"	20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7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9
보건복지부령제53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5
보건복지부령제539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15
국토교통부령제469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15
해양수산부령제267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18
국토교통부령제46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4	19145	4

보건복지부령제540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전부개정령	2017. 12. 5	19146	9
고용노동부령제20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7. 12. 8	19149	9
농림축산식품부령제29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7. 12. 11	19150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2	19151	140
보건복지부령제54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1
여성가족부령제11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3	19152	48
환경부령제72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017. 12. 14	19153	4
고용노동부령제20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7. 12. 15	19154	9

